

의안번호	제3001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자	정영환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5. 9. 26.

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(정영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정영환, 최두임, 김향숙,
김원순, 우정욱, 이정숙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, 의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기능, 구성,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규정(안 제1조)

-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·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
-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
- 정책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개발
- 의장·상임위원장·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

-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

다.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15명 이내로 구성,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%를 넘지 않도록 노력
- 전문가, 전직 의원·공무원, 사회적 덕망 있는 사람 위촉
- 위원회 사무는 의정담당이 간사로 수행

라. 임기(안 제4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
- 중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시: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임기

마. 위원의 의무(안 제5조)

- 자문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알게 된 기밀은 누설 금지

바. 위원의 위촉 해제(안 제6조)

- 사임, 역할 미수행, 기밀 누설 등 해제 사유 명시

사. 회의 운영(안 제7조)

-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요구 시 소집
- 소집 요구 시 관련 안건 및 자료 제출 의무
- 위원회 회의 개의 시 출석 및 의결사항

아. 위원장의 직무(안 제8조)

-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, 직무 수행 불가 시 부위원장 대행

자. 수당 등(안 제9조)

- 회의 참석, 현장 확인 등 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
- 정책 연구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
차. 운영세칙(안 제10조)

-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6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26.(금) ~ 10. 1.(수)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·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와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
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개발
3. 고성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·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
4.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

제3조(구성 및 위촉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행정, 농·어업,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, 관광, 환경, 교통, 건

설, 건축,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2.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·행정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

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② 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

2.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요구를 할 때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,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수당 등)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,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5조(수당 등)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군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. 다만,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군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